

예비심사 안건

의안번호	제 호
의 결 연월일	... (제 회)

의 결
사 항

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
법률 시행규칙 개정안」

신 설 · 강 화 규 제 심 사 안

제 출 자	중소기업청장 한정화
제출연월일	2013. 04. .

목 차

I. 규제 심사(안) 개요	1
□ 요 약	1
□ 제도(개정안) 개요	2
II. 규제심사안	3
1. 공동사업의 범위 설정	3

I. 규제 심사(안) 개요

□ 요 약

규제 사무명	현행 규제내용	변경(또는 신설) 규제내용
1. 공동사업의 범위 설정 * 신설 * 시행규칙 제1조의2		소기업 우선구매 제도에서 제한경쟁입찰이 적용되는 공동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설정

□ 제도(개정안) 개요

- 소기업 우선구매 제도에서 조합과 공동사업으로 제품화한 경우 제한 또는 지명경쟁을 적용할 수 있는 공동사업의 명확화 필요
 - 공동사업으로 협업사업, 공동상표, 공동특허, 공동 기술개발 사업을 명시

II. 규제심사안

1. 공동사업 범위 설정

㉠ 규제 신설 (또는 강화) 내용

소기업 우선구매 제도에서 제한경쟁입찰이 적용되는 공동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설정

<조문 대비표>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제1조의2(공동사업) 영 제2조의2제1항제2호에서 “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사업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. 1.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37조에 따른 협업사업 2. 공동상표의 도입 또는 활용을 위해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사업 3. 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(이하 “조합”이라 한다) 또는 3인 이상의 조합원이 공동으로 보유한 특

허권을 활용하는 사업

4. 조합 또는 3인 이상의 조합원이

공동으로 참여하는 중소기업청장

이 지정한 기술개발사업

② 규제영향분석서

【분석대상 규제의 개요】

1. 규제사무명 등	등록번호				
	규제사무명	공동사업 범위 설정			
2. 구분	등록변경사유	신설	등록단위	비중요규제	
	성격별분류	경제적규제/진입	유형/구분	기준설정	
3.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	소관부처	중소기업청	제안부처	중소기업청	
	담당부서	공공구매제도과	처리기관	중앙행정기관(본부)	
	작성자 인적사항	- 중소기업청 공공구매제도과 : 심재윤			
4. 근거법령명 등	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의2				
5.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	유형		인원수 또는 규모	의견 수렴방식	의견내용
	피규제자	공공기관	516개	설문조사 등	이견 없음
	이해관계자	공공구매 참여 중소기업	27천여개	공청회 등	도입 필요
	관련부처	기획재정부	-	부처협의	이견 없음
6. 규제존속기한	- 존속기한 : 2023.04.10				
7. 종전규제 및 신설(강화)규제의 내용	- 신설(강화)규제내용 소기업 우선구매 제도에서 제한경쟁입찰이 적용되는 공동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설정				
8. 규제체계도					

【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】

가. 규제의 필요성

1) 문제정의

- 공공구매에서 일반 품목(중기간 경쟁품목 외)에 대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경쟁함에 따라 중소기업의 수주기회 축소
- 이에 일반 품목에서 중소기업의 수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3호의 중소기업의 공동사업 특례 필요
 - *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2 ① 3.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3인 이상의 제조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(물품을 직접 제조하거나 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말한다. 이하 이 호에서 같다)이 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(이하 “조합”이라 한다)과 함께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사업을 통하여 제품화한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제조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. 다만, 공공기관의 장이 해당 조합에 요청하여 공동사업의 주체인 3인 이상의 제조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추천받은 경우에는 추천받은 제조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중에서 지명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- 따라서 중소기업에 대하여 제한 또는 지명경쟁을 허용할 수 있는 세부적인 공동사업을 정하여야 함

2) 규제의 신설·강화 필요성

- 일반품목에서는 중소기업(소상공인) 우대가 거의 없어 대기업 및 중기업과 경쟁한 결과 공공조달 수주비율이 낮은 것으로 추정

- * 조달청 자료를 기초로 추정된 결과 일반품목에서 소기업 수주비율은 33% 정도
- 그러나 초기 판로개척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공공조달시장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제도 필요
- 이에 공공구매에서의 소기업의 구매가 확대될 수 있도록 공동사업에 대한 특례를 설정할 필요

나. 규제대안검토 및 비용·편익 분석과 비교

1) 규제대안의 검토

-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3호에서는 소기업의 공동사업에 대한 계약방법의 특례를 규정
 - 이에 따라 판로지원법 시행규칙에서는 공동사업에 해당하는 세부적인 사업을 정하는 것이며,
 - 공동사업으로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을 열거하는 방법 외의 대안은 없음

2) 비용·편익 분석과 비교

- 금번 공동사업 범위 설정에 따른 별도의 추가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며,
- 공동사업을 신설을 통해 공공구매에서 소기업 구매가 확대되어 중소기업 성장사다리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

다. 규제 적정성 및 실효성

1) 규제의 적정성

- 공공 조달시장은 초기 기업에 대한 판로를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시장
 - 중소기업과 우선조달계약의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에 대한 우대사항을 두는 것은 경제적 약자보호 측면에서 적정하며,
 - 공동사업의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공공기관이 적용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필요 최소한의 규제라 평가
- 따라서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제품 구매 확대라는 목적을 달성하면서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하도록 제한함은 불가피하며,
 - 공동사업의 범위를 객관적으로 확인가능한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, 공동사업의 범위 설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

2) 이해관계자 협의

- 공공구매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관련기관 및 단체 의견수렴
 -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관련 제도 설명회*(12.6.22) 및 공청회** 실시(12.9.5)
 - * 중소기업중앙회 대회의실, 협동조합 및 중소기업 134명 참석
 - ** 중소기업중앙회 대회의실, 협동조합과 단체 및 중소기업 171명 참석
- 공공기관 대상 중소기업 우선구매 설문조사 실시(13.3월)

-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하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우선 구매의 필요성 및 도입방안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
- * 설문조사 결과 80% 이상의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 우선구매 제도를 활용하겠다는 응답을 제시
- 관계부처 협의 ('12. 6. 29 ~ '12. 7. 8)
 - 재정부 의견 제시 및 조정
- 입법예고 ('12. 7. 2 ~ '12. 7. 23)
 - 의견 없음

3) 규제집행의 실효성(집행자원과 능력)

- 해당조항의 적용대상인 공공기관은 정부의 국정철학인 중소기업 제품 구매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,
 - 금번 중소기업 우선구매 제도 신설(안)에 대해서도 특히 중소기업 구매가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 하였던 바,
 - 규제집행의 실효성 확보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